(주)아이디에이 공정거래 가이드라인

문서번호: IDA-ESG-S-033 (P3)
제정일: 2026. 08. 19.
개정번호: 00
주관부서: 경영지원팀
승인: 대표이사 최성규

제 1 조 (목적)

본 가이드라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공정거래 관련 법령 및 회사의 윤리경영 원칙에 따라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협력사 및 거래상대방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① 본 가이드라인은 (주)아이디에이의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② 구매, 자재, 생산, 품질, 영업, 개발, 경영지원 등 협력사 및 거래처와 업무상 접촉하는 모든 임직원은 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협력사 및 외주업체에 대해서도 필요한 범위에서 본 가이드라인의 취지를 안내하고 준수를 요청할 수 있다.

제 3 조 공정거래 기본원칙

1. 법령 준수

2. 공정한 거래

3. 투명한 의사결정

4. 상호존중

5. 기록과 증빙

제 4 조 협력사 선정 및 업체 평가

① 가격, 품질, 납기, 기술력, 안전·환경, ESG, 재무건전성 및 거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②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평가기준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③ 개인의 친분, 가족관계 또는 사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협력사를 선정해서는 안 된다.

제 5 조 견적 및 입찰 관련 준수사항

① 업체 간 견적가격 또는 거래조건을 사전에 공유하거나 조정해서는 안 된다.

② 경쟁업체의 견적서 또는 영업정보를 부당하게 취득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

③ 가격 담합, 낙찰 예정업체 사전 결정, 들러리 업체 참여, 견적가격 사전 조정 및 허위 견적서를 금지한다.

제 6 조 가격 및 거래조건

① 거래가격은 합리적인 협의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가격인하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③ 합의된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지 않는다.

④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 협의하고 문서화한다.

제 7 조 하도급 및 외주거래

① 관련 법령과 계약조건을 준수한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지연 지급하거나 감액하지 않는다.

③ 검수를 부당하게 지연하지 않는다.

④ 회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비용을 협력사에 부당하게 전가하지 않는다.

⑤ 계약내용에 없는 추가 업무를 무상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제 8 조 부당한 거래상 지위 이용 금지

정당한 사유 없는 가격인하, 발주취소, 납품조건 변경, 비용전가, 업무 외 구매요구, 기부·협찬 요구, 기술자료 제공 요구, 거래중단 또는 제한을 해서는 안 된다.

제 9 조 협력사의 기술자료 및 영업정보 보호

① 협력사의 도면, 설계자료, 제조방법, 공정정보, 원가자료, 견적서 등을 업무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는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하거나 제 3 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③ 내부 공유도 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한다.

④ 거래 종료 후에도 비밀정보를 보호한다.

제 10 조 부당한 공동행위 및 담합 금지

경쟁사업자와 가격, 생산량, 거래처·시장 배분, 입찰가격, 낙찰업체, 입찰 참여 여부, 원가 및 주요 영업정보를 합의하거나 교환해서는 안 된다.

가격이나 거래조건에 관한 민감한 정보가 논의되면 즉시 중단하고 담당 부서에 보고한다.

제 11 조 거래처와의 정보교환

업무상 필요한 범위를 넘어 경쟁사업자 또는 협력사와 민감한 정보를 교환하지 않는다.

경쟁사의 비공개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임의로 활용하지 않고 관리자에게 보고한다.

제 12 조 금품·향응 및 경제적 이익 수수 금지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 또는 협력사로부터 부당한 금품, 선물, 식사, 향응, 여행, 편의 등을 요구하거나 수수해서는 안 된다.

제 13 조 이해상충 금지

본인 또는 가족 등의 사적인 이해관계가 거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다.

협력사와의 가족관계, 개인적 금전거래, 투자 등 이해상충이 있는 경우 사전에 부서장에게 알린다.

제 14 조 품질 및 검수의 공정성

객관적인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하고, 부당한 불합격 처리나 검수 지연을 하지 않는다.

품질문제 발생 시 사실관계와 책임범위를 객관적으로 확인한다.

제 15 조 협력사에 대한 보복행위 금지

협력사가 부당한 요구를 거부하거나 공정거래 문제를 제기·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 16 조 영업 및 판매 과정의 공정거래

허위·과장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며 경쟁사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부당한 구매강요, 임의의 계약조건 약속을 하지 않는다.

제 17 조 공정거래 관련 업무기록

견적, 비교견적, 업체평가, 발주, 계약, 단가협의, 납품·검수, 대금지급, 기술자료, 거래조건 변경 및 주요 협의내용을 적절히 기록·보관한다.

제 18 조 위반행위 신고 및 상담

공정거래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회사의 윤리경영 신고채널 또는 고충·신고채널을 이용할 수 있다.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며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해서는 안 된다.

제 19 조 임직원 교육

공정거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기교육을 실시한다. 구매·자재, 영업, 품질, 생산, 개발, 경영지원 및 협력사 관리 담당자를 포함한다.

제 20 조 위반 시 조치

가이드라인 위반 임직원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윤리규정 및 관련 인사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법령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필요한 법적 조치를 검토한다.

제 21 조 사전 상담 원칙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임의로 판단하지 않고 사전에 상담한다.

가격·입찰정보 공유, 협력사 단가인하·비용부담 요구, 기술자료 요구, 거래조건 변경, 거래중단·제한 등은 실행 전에 담당 관리자 또는 공정거래 담당자에게 확인한다.

제 22 조 임직원 실천 체크리스트

구분	스스로 확인할 사항
협력사 선정	객관적인 기준으로 선정했는가?
견적	업체 간 가격정보를 공유하지 않았는가?
입찰	담합 또는 들러리 입찰을 요구하지 않았는가?
가격	정당한 근거 없이 가격인하를 요구하지 않았는가?
계약	합의된 계약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지 않았는가?
하도급	대금지급을 부당하게 지연하지 않았는가?
기술자료	협력사의 기술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하지 않았는가?
비용	회사 비용을 협력사에 부당하게 전가하지 않았는가?
금품	거래처로부터 부당한 금품·향응을 받지 않았는가?
이해상충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거래에 영향을 주지 않았는가?
신고	공정거래 위반 의심사항을 보고했는가?

부칙

제 1 조 (시행일) 본 가이드라인은 2026 년 08 월 19 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개정) 관련 법령의 개정 또는 회사의 경영환경 변화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개정할 수 있다.

제 3 조 (준용) 본 가이드라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취업규칙, 윤리규정, 조달정책 및 기타 내부규정을 따른다.